

‘악플 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일 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후 1시

○장 소 : 한백교회 안병무홀

○주 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 회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 제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 토 론 (가다나순)

강장묵 (세종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김보라미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동식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악플 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송 경 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I. 인터넷 발전의 명암

- 한국의 인터넷 발전은 비약적인 수준
 -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8위(3,482만 명), 인터넷 이용률 세계 12위(72.2%) 기록할 정도로 대중적인 보급이 이루어짐(ITU 2007년 말 기준)
 - 인터넷이 도입된 지 14년 만에 한국의 인터넷 환경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것으로

- 한국의 비약적인 사이버 현상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인터넷의 미래를 알려면 한국을 보라.” (The Independent, 2006년 11월 22일)
 -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 (가디언, 2003년 2월 25일)
 - ※ 사이버 버디, 미니홈피의 보급, 인터넷 팬클럽, 광범위한 인터넷 망의 보급 등이 한국에서의 인터넷 환경과 그로 인한 사회·정치·경제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

- 이런 비약적인 인터넷 환경의 성장과 함께 웹 공간은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제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 사이버 현상의 이중성 : 긍정적인 측면 vs. 부정적인 측면
 - 민주주의 가치간의 충돌 : 표현의 자유공간 vs. 프라이버시 침해 공간(익명성/악플)
 -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웹 공간이 사적 공간(private space)과 공적 공간(public space)이 혼재하기 때문
 - ※ 개인이 남긴 블로그의 글은 인터넷에서 확산 가능성 높아. 그렇다면 글을 쓰는 개인은 사적공간에서 글을 쓰는가? 공적공간에서 글을 쓰는가?

- 인터넷 환경의 등장은 기존 오프라인의 질서와는 혁명적으로 다른 형태
 - 새로운 양식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의 확립이 필요
 - 일반적으로 현실의 변화발전의 속도에 비해 인식론적·법적·제도적인 논의는 뒤처지게 마련 (Castells, 2001)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의 이중성 문제에 주목한 많은 논의가 등장하고 있음

- 대표적인 논의가 인터넷 규제와 과잉 규제담론

- 특히 올해 나타난 여러 인터넷 관련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 본 발제문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천착해서 인터넷 규제 논의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개괄하고 연예인 자살사건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함

- 다만, 본 발제문은 현상에 대한 해석과 토론을 위한 자료이므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대안 마련 토론의 기초자료임을 먼저 밝히고자 함

II. 인터넷 규제논의의 전제 조건

□ 연예인 자살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인터넷 악플인가?

- 인터넷 악플 vs.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의 표출

※ Time (South Koreans Are Shaken by a Celebrity Suicide) 지적 :

보수적인 한국에서 이혼모의 고통 언급,

근본문제 지적하지 않는 언론의 문제점 비판

(Time 인터넷판 검색일, 2008년 10월 7일)

○ 인터넷 악플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사회적 병폐의 노출

- 사회적 병폐 : 2006년 OECD 평균 자살률 10만 명중 10명, 한국은 21.5명(1위)

※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437명 → 2001년 6,907명 → 2002년 8,612명 → 2003년 10,897명 → 2004년 11,491명 → 2005년 12,010명 → 2006년 10,652명 → 2007년 12,174명으로 증가. 39분마다 1명씩 자살(통계청, 2008)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증가 추세 2003년 395,457명 → 2007년 525,466명

□ 그럼에도 인터넷 악플이 우울증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도 있음

- 인터넷 여론에 민감한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 심리학적으로 영향 받을 것임

- 그 대안으로 인터넷 악플을 극복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

- 악플의 피해는 연예인 만의 문제가 아님. 일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과거 주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악플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함

※ 군 가산점제나 호주제 운동 시, 일부 여성단체와 토론회 참석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악플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받기도 함

- 따라서 이 문제는 정략적인 접근 보다는 근본적인 인터넷 문화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민주주의 시민권의 차원에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① 댓글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중요

-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심의와 토론의 부재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음

- 일방의 입장을 밀어 붙이기보다는 여러 행위자(정당, 시민단체, 학계, 인터넷 업계, 네티즌 등)의 입장을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교집합적인 영역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이번 사건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터넷 산업적인 발달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타산하고 중요하게는 이를 합의할 수 있는 서로간의 논의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임 :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님

② 감정적인 이분법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고 냉정한 평가와 성찰을 해야 할 것임

-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사실 오프라인 문화의 반영인 측면도 있음

-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의 논의도 “댓글제한, 실명제 강화 vs. 댓글제한 반대, 실명제 반대”란 이분법적인 당리당략적 구도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③ 제도와 규제생산으로 야기되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은 구분해야 할 것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 자살의 주범 = 인터넷 악플”이란 등식으로 인터넷 댓글문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매도당해서는 안 될 것임

- 주관적인 경험과 가치평가 보다는 과연 댓글이 필요한지? 과연 댓글 중에 얼마의 비중이 악플인지? 등의 현상의 파악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일시적인 평가에 의해 형성된 규제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 필요

·그래야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④ 민주주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해당사회의 역사문화적 규범과 가치의 문제

- 시민권은 한번 침해당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무수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것은 역사적 경험

- 그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200년 근대 민주주의 확대과정에서 제일로 부여된 시민 기본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의회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것도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21조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유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것. 헌법재판소도 2002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논거를 마련(99헌마480)

- 따라서 현재 논의의 핵심은 개인의 시민권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표현의 자유 vs. 프라이버시권)

⑤ 사이버 교육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 현재 별다른 제도 없이 가중처벌법이 만들어 질 경우의 결과에 대한 고려 있어야
- 사이버 공간에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소고발조치 없이 반의사불법죄¹⁾ 수 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가혹한 법적 잣대

- 핵심적인 것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와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음. 국가는 오히려 이런 교육의 주체이면서 여태 방관하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2006년 인터넷 미래를 고민해보는 <리프트>라는 컨퍼런스를 창립한 로렌트 허그(Laurent Haug) : “온라인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행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인터넷 부작용을 막는 유일한 해답은 교육”이라고 지적 (이데일리, 2008년 9월 5일)

⑥ 핫라인 설치 및 기타 자율규제적인 기술 장치의 모색도 필요

- 예컨대 기사나 댓글의 제목 옆에 적색과 녹색경보 등을 달아 일정 수 이상일 경우 자율규제적인 정화시스템 가동 등으로 네티즌들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 가능
- 시민단체의 핫라인 운영
- 기술진보에 따른 다양한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방식은 외부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임

⑦ 규제의 비대칭성과 실효성 문제

- 정부의 과도한 강제적 규제는 오히려 사용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사용자가 규제를 피해 해외 서비스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일 것
- 무엇보다 현행 형법과 선거법, 전기통신망법 등의 법률로서 처벌이 가능한 데 사이버 공간에서

1)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는 강화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 필요

- 그리고 친고죄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강화된 형태로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는 과잉금지 원칙²⁾에도 위배될 소지를 가지고 있음

※ 심지어 오프라인의 형법인 모욕죄도 독일에서 1960년대의 마지막 유죄 판결 이후 형사처벌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고 있음

⑧ 언론의 책임과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음

- 여야나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 발전의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공간 마련해야

- 아쉽게도 많은 언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과 본질보다는 근시안적인 처방에 급급한 보도행태 :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인권 유린현상도 발견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 더 큰 문제가 무엇이고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을 내 놓은 기사는 적어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에 대해 의문 제기

- 나아가 일부의 사안과 본질을 왜곡하고 즉자적인 반응을 양산하고 있음(첨부 참조)

※ 특히 최근 연예인 자살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예컨대 과다 취재, 불확실한 의혹의 확산 등에서 성찰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임

2)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배할 경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 부] 사이버 모욕죄, 악플 등에 관한 주요 신문 사설³⁾

10월 5일 <조선일보>. ‘사이버 모욕죄’, 여·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5/2008100500628.html

주요 내용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 준비해야

10월 2일 <조선일보>. 최진실씨, 그쪽은 탈출구(脫出口)가 아닙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2/2008100201611.html

주요 내용 : 인터넷 악성루머, 댓글차단 문제 제기

10월 6일 <동아일보>. 사이버 인격살인은 표현의 자유 아닌 범죄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60102>

주요 내용 : 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일파만파의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사이버 인격살인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

10월 4일 <동아일보>. 언어를 살인흉기 만드는 국민으로 살건가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40038>

주요 내용 : 연예인들의 자살도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악플) 및 루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막말문화와 사이버 언어폭력 성찰과 반성해야

10월 6일 <중앙일보>. ‘자살 바이러스’의 고리를 끊자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10/06/3213145.html>

주요 내용 : 사회 전체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부터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상담 전화의 확충 및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10월 4일 <중앙일보>. 사이버 폭력 막을 ‘최진실 법’ 만들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10/04/3212506.html>

주요 내용 : 네티즌의 의식이 스스로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도 검토.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는 통합적인 법, ‘최진실 법’을 만들 때

10월 4일 <한국일보>. ‘최진실 법’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10/h2008100402531776070.htm>

주요 내용 : 힘으로 부딪치는 찬반 논란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이버 해악만 가려서 별할 방안을 찾기 위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

3) 여기서 날자는 인터넷 검색인 관계로 실제 지면화 된 날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월 3일 <한국일보>. “죽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겁쟁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10/h2008100302325876070.htm>

[사설/10월 3일]

주요 내용 :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더 이상 악플을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0월 6일 <서울신문>. 인터넷 테러대처 정쟁 대상 아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06031012>

주요 내용 : 인터넷 문화를 끌어올리려면 우선적으로 악플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찬반 논란을 접고 인터넷 테러 차단을 위해 힘을 모으기 바란다.

10월 3일 <서울신문>. 충격적인 최진실씨의 죽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03031008>

주요 내용 : 인터넷과 악의적인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케 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10월 5일 <한겨레신문>.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4124.html>

주요 내용 : 권력이 극히 소수인 ‘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자유로운 의사소통까지 훼손하려 들어선 안 된다.

10월 2일 <한겨레신문>. 한 대중 스타의 자살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3746.html>

주요 내용 : 집단적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한둘이 아니다.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언어폭력이다. 마땅히 차단돼야 한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면 먼저 바로잡아야. 자살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

10월 6일 <경향신문>. ‘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60004165&code=990101

주요 내용 :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법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 처벌 가능

10월 2일 <세계일보>.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악플 강력 제재해야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81002003716&subctg1=02&subctg2=01>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토록 노력해 악플을 처음부터 차단토록 해야 한다. 또 가정과 학교, 사회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배려와 경의의 덕목을 강조하는 예

절·정신교육에 힘써야 겠다

10월 5일 <국민일보>. ‘최진실法’은 政爭 대상 아니다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053970&cp=nv

주요 내용 : 사이버 세계의 자체 정화기능 어려워. ‘반 좃불법’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접근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10월 3일 <국민일보>. 산 者와 죽은 者 공동의 책임 ‘최진실 사건’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052875&cp=nv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국회에서는 사이버모욕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흥기를 들고 칼춤을 추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씨 사건이 남긴 교훈 아니겠는가.

10월 4일 <문화일보>. 정기국회 회기 내 ‘최진실法’ 관철하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00401032337043002>

주요 내용 : 명예훼손이 현실세계에서는 형법 제307조에 의해, 사이버세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되고 사이버 법정 형량이 보다 높은 사실까지 적시해 모욕도 사이버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10월 2일 <매일경제>. 사람 잡는 인터넷 악플 뿌리뽑아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03895>

주요 내용 :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본인확인제를 확대해야 한다. 악플의 심각한 피해에 걸맞게 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네티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10월 3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악플 더는 방치할 수 없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0311761>

주요 내용 : 정부 당국은 네티즌들이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